

의료제휴 협약서

한남대학교(이하 “학교” 라 한다)와 루미네스 치과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의료 제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은 학교 임직원들과 그 직계가족에게 진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업무제휴 내용을 규정하며 양 기관의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협약사항)

- ① 병원은 제1조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약속된 할인율을 적용한다.
- ② 양 기관은 상호 명예를 존중하고 신의와 품의를 유지하도록 한다.
- ③ 병원은 학교의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감면한다.

제 3 조 (대상 확인 방법)

- ① 병원에 진료 접수 시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.
- ② 학교 교직원의 직계가족이 진료 접수 시 의료보험카드 및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해야한다.

제 4 조 (신의성실의 의무)

- ① 양 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그 취지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.
- ② 양 기관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이 약관은 양 기관이 계약조건에 기재된 거래를 함에 있어 약관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이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한 무효는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.
- ③ 이 약관의 내용 변경은 계약에 참여한 양 기관 대표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
제 6 조 (유효기간)

본 협약서의 제 권리와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단, 협약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의를 제기치 않을 시에는 1년씩 자동연장 한다.

제 7 조 (계약의 해지)

양 기관은 언제든지 1개월 전의 사전 서면 통지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병원이 영업취소, 강제집행,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병원이 학교에게 중대한 불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

양 기관은 상대방이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및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및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8조 (효력 및 해석)

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효하고 협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제 9조 (특약/기타사항)

기타

진료 내원 시 학교의 직원 및 회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본 협약의 체결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3년 11월 10일



루미네스치과
LUMINESCE DENTAL CLINIC

총장 이 광 섭

이 광섭

원장 박 용 석